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 일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6 (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7. 4. 23(월)
- 다. 상정일자 : 2007. 4. 23(월) 제1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레심사특별위원회(2007. 4. 23)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2005.12.31)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변경 (안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사업장과 영업장 면적이 125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추가(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2005.12.31)되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 의무사업장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 띄어쓰기 권고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자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하였으며

다. 검토의견

- 검토결과 군의 자체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5.12.31)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변경 (안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과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추가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입법예고 : 실시(2006.11.3 ~ 11.23) 결과, 의견제출 없음
-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협의회 심의(2007.3.16)결과, 원안가결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평창군 폐기물 관리예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 영업(객실·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u>“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생략)</p> <p>1. ~ 5. (생략)</p> <p>6.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u> <u>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u> <u>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u> <u>사업장을 말한다.</u></p> <p>7. ~ 11. (생략)</p>	<p>제명 <u>“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u> <u>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u> <u>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 및 「식품</u> <u>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u> <u>따른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u> <u>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u> <u>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u> <u>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u> <u>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u> <u>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u> <u>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u> <u>일반음식점 영업(객실·객석면적이</u> <u>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u> <u>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u> <u>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u> <u>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u> <u>자를 말한다.</u></p> <p>7. ~ 11. (현행과 같음)</p>

「관 제 법령 발 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4.8.11]

[시행일:2007.1.1] 제9조의2제2호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삭제<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2005.3.31>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3.31>